

검 토 보 고 서

-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1. 경 과

가. 발 의 자 : 이규완 의원외 7인

나. 발의 및 회부일자 : 2009년 6월 2일/ 2009년 6월 4일

다. 위원회 상정일자 : 2009년 6월 10일

- 제2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
2. 개정이유

- 2008년 11월 개정 이후 변경된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소관부서 정리, 조문을 알기쉬운 법률용어로 정비하여 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충북학사 운영에 관한 소관이 당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행정소방 위원회로 변경.
- 조문의 체계나 자구를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임.

4. 검토결과

- 개정 조례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붙임 :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